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1. 10. 20.(수) 10:00

제23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 
공개에 관한 조례안  
[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]



**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**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137호
- 나. 제 출 자 : 윤영희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1. 10. 8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10. 8.

## 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 낭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의원 발의 되었음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나.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대상 규정(안 제2조)
- 다.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예산낭비 심사 및 예산 절감 시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48조의2,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54조의 2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제정이유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48조의2 및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54조의 2에 근거, 우리 구 예산 절감 사례를 발굴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 절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고자 의원 발의된 안건임.

### 나. 주요 내용

-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공개해야 할 대상과 공개시기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
- 안 제4조는 예산·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, 예산절약·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의 접수·처리를 위해 “예산낭비 신고센터”를 설치 운영하면서 그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5조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에 따른 심사를 기(既) 설치된 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”에서 심사하고자 하며 이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라 판단됨.
- 안 제6조는 예산을 절약한 공무원이나 개인에게 「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규칙」에 의거 성과금이나 사례금을 지급하고 「금천구표창조례」에 의거 표창할 수 할 수 있게 하였음.

## 다.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고 금천구의 재정운용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예산절감이나 낭비사례를 공개하고, 예산이 절약되거나 제도개선 등이 인정된 경우 성과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-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장려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다는 측면과 우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과 예산의 불법 지출 및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제도이기 때문에 제정의의는 크다고 판단됨.
- 다만 금천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경우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

붙임 : 관계법령 1부.

# 관계법령

## 1) 「지방재정법」

**제48조의2(예산·기금의 불법지출·낭비에 대한 주민감시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, 재정지원을 받는 자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(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·운영하는 자를 말한다. 다만, 「국가재정법」 제8조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## 2)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

**제54조의2(예산·기금의 불법지출·낭비에 대한 주민감시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·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,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·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(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)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다.

### 3) 「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」

**제16조의2(지방예산낭비사례 등 공개)**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중에서 예산절감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한 사례를 모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. 다만,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신고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사례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·직위 또는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.